2025년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지역특화 제조AI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AI·제조데이터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 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3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하여 제출하며, 협약 시 재안내 예정

* 수행기관 사업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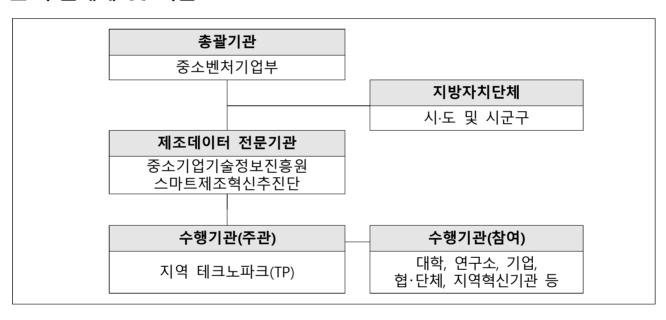
- **(선정목표)** 3개 수행기관(컨소시엄*)
 - * 지역 테크노파크, 중소·중견·대기업, 비영리기관(협·단체),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 기관 등 구성(지자체 지원금 매칭 확약 필요)

< 연간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지자체·민간부담금(센터당 연간 20억원 이상)		
(센터당 연간 20억원 이내)	지자체부담금(현금+현물*)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연도별 지자체부담금 및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내 한도로 인건비 및 서버·GPU 등 컴퓨팅 자원 현물 인정

□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총괄 ·사업 예산 확보 및 대응
지방자치단체	•제조AI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지원예산 편성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제조데이터 생태계 조성 사업 지침 제·개정 및 수행기관 평가·관리 • 외부 기관과의 협력 추진 • 정부사업(자율형공장, 디지털협업공장 등) 연계방안 기획
수행기관	• 제조기업에 현장밀착 지원 제공을 위한 제조A센터 및 지역 플랫폼 구축 • 지역 제조기업 대상 지역별 특화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수행 • 교육, 제조AI 등 제조혁신 관련 정보제공, 기업간 매칭 등 네트워킹 활동 • 기타 성과확산 활동 등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및 필수요건

- (신청자격)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협·단체), 대학, 연구소 등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 (주관기관)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지역 내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사업 운영 경험을 보유한 지역 테크노파크(TP)
 - (참여기관) 특정 분야(IT, 데이터, 공정, 장비 등)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주관기관으로부터 과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필수요건) 지역 테크노파크(TP)를 주관기관으로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협·단체), 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등과 컨소 시엄 구성*하고, 지자체 지원금 매칭 확약서 제출
 -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업·기관수의 제한 없음

□ 지원제외 사항

- ※ 협약대상으로 선정되어 <u>협약이 진행된 이후</u>라도 <u>지원제외 요건이 확인</u>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u>협약해약 처리</u>
- ※ 전문기관은 관련 지원제외 요건 관련 <u>증빙서류를 요구</u>할 수 있으며, <u>미제출 시에는</u> 지원 제외 처리
- ※ 컨소시엄 내 1개 기관이라도 지원 제외 사항 발생 시, 지원 제외 처리
- 접수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제한,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제한업종 등 지원제외 요건(아래 표 참고)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주관 및 참여기관·기업 모두 해당하며 신청기관별 자체 확인 후 신청 필요

< 지원제외 요건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최근 결산 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미해당)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완전자본잠식 :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3. 핵심 요구사항

- (인프라 구축)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AI 도입 촉진을 위한 제조AI센터 및 지역 플랫폼 구축
 -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밀착 지원을 위한 공간 확보, 컴퓨팅 자원 연계 등 제조AI센터 구축 수행
 - 정부부처, 지자체 사업 등을 통해 기구축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하고, 신규 컴퓨팅 자원 확보는 민간 클라우드 활용 권고
 - 제조AI센터가 기업 간 협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반 인프라 조성



< 제조AI센터 구축운영 방향성 >

- (지원 프로그램) 지역별 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제조 AI 현황, 기술 수준, 특화 산업 등을 반영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
 -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제조AI 솔루션 보급 등으로 제조기업의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 지원 프로그램 마련
 - * 실증, 컨설팅 등 지역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제시 가능
 - 중소제조기업 성장단계별(창업→성장→글로벌 진출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중기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성과 확대

< 단계별 제조AI 기업 지원 프로그램(예시) >

구 분	(1단계) 테스트베드 지원	(2단계) 지역별 맞춤형 솔루션 고도화	(3단계) 지역내 네트워킹 협업
제조AI 센터 역할	 기업 수요조사 기업의 제조데이터로 Test-bed 및 실증 지원 	③ 공급기업-제조기업 매칭 ④ 솔루션 확보 및 고도화	⑤ 성과 공유 및 확산⑥ 가치사슬 내 연계협력
지원 시스템 모식도	지원 기업 선정 건설팅 KAMP Test-bed 실종 실종 결과 확보	실증 완료 기업	지역TP KAMP 학교. 연구 기관 공급기업 지역 제조기업의 제조시 확산
주요 목적	실증 결과에 따른 제조AI 구현 방향성 수립	공급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 구축	생태계 구축 및 선순환을 통한 자생력 확보

- (협의체) 지역 내 중소제조기업이 필요한 프로그램 발굴 및 직접 지원을 통해 지역 제조혁신을 견인할 혁신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지자체를 포함한 중소·중견·대기업, 협·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제조AI 지원 협의체(가칭)를 구성,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제조AI 솔루션 조사, 발굴, 사업화 지원 등 전주기 지원
 - 기업 대상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성과공유회 등 AI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AI·제조혁신 관련 정보공유 및 성과확산 활동 진행(연평균 4건 이상 필수)
- (KAMP 연계) KAMP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수사례, AI·데이터셋 및 활용가이드 등 공유를 통한 연계 기반 성과 확산계획 수립
 - 제조AI센터를 통한 기업지원 성과를 KAMP에 축척·공유하여, 제조 공급기업이 다시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 마련
- (전담인력 확보) 주관기관은 수요조사,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신규 발굴 등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운용계획 제시
 - 주관기관은 과제책임자를 포함하여 전문가 3명(정규직) 이상 사업 참여 및 사업 기간 내 유지 권장
- (지속 가능 운영방안) 정부 지원 종료 후,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 제시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접수 마감일 17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7시 이후 신청·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7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접수 마감 1~2일 전 신청완료 권고)
- ※ 사업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가능
- □ **공모방식** : 수행기관에서 핵심 요구사항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선정·추진
- □ 신청기간 : 2025년 4월 1일(화) ~ 4월 14일(월) 17시까지
- □ 사업설명회 : 2025년 3월 20일(목) 14시(예정)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세종)
 - * 신청기관에 대해서 별도 안내 예정
-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을 통해 서류 제출(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 <u>모집공고 메뉴</u>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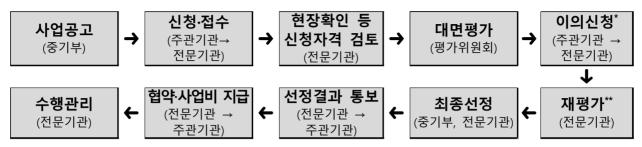
□ 제출서류

단계	연번	서 식 명	기관별	
근계	한단	시 꼭 경	주관	참여
사업 신청시 일괄 제출	1	사업계획서	0	1
	2	지자체 부담금 매칭 확약서	0	-
	3	컨소시엄 확약서	0	-
	4	참여기업(기관) 신용상태 조회 동의 및 참여확인서	0	0
	(5)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0	0
	6	현물 납입 확약서	해당시	해당시
	7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24년)*	0	0
	8	사업자등록증(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0	0
	9	법인등기부등본(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0	0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0	0
	11)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0	0

- *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 ** 접수마감일 기준 전년도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재무제표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5.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협약, 정부출연금 지급 등

□ 선정·평가 절차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 평가절차가 종료된 후 1회에 한해 진행
-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 ※ 신청 접수결과를 고려하여 서면평가를 통해 대면평가 대상을 선정 및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추진(추후 별도 안내)
- (현장확인) 사업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에서 사전 공지 후 현장확인 추진
 - 현장확인 내용은 대면평가에 정성적 평가 자료로 활용

< 확인 항목(예시) >

주요 내용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기존 설비, 장비, SW 등의 활용 가능성		
	• 기구축 인프라에 대한 운용 및 활용 능력		
	• 지원 기업 및 인프라 간 연계 가능성		
	• 이외 사업계획서 내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6인 내외)하여, 사업계획서의 정책부합성, 사업관리, 성과확산, 지역 파급효과 등을 평가
 - 사업계획 발표 20분, 질의응답 40분 등 총 60분 내외로 진행 예정
 -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평가시간 등 평가계획 변경 가능(추후 별도 안내)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 대표 등으로 변경 가능

< 평가 항목 >

평가분류	세부 평가 기준	
총 점		100
	•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5
정책부합성	·수행계획 및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10
(30)	•지자체 등 지역의 참여 의지 및 노력 정도	10
	•기 구축된 지역 인프라 활용도	5
게 지 데 이 터 시 하요	·사업 규모 및 계획의 적정성	10
제조데이터·AI활용 전략 방법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조 데이터 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35)	·지역 특화 서비스 구축 내용의 타당성 및 우수성 ·지역 확산을 위한 계획의 타당성	15
11013131	• 일정, 산출물,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5
사업관리 (20)	• 컨소시엄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10
	•구축 시스템 및 서비스 결과물의 보안 관리 적정성	5
14-1-11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성화 계획의 우수성	5
성과확산	·KAMP연계의 적절성 및 확산 가능성	5
(15)	•정부지원 종료 이후, 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성	5

- * 평가항목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일부 변경·조정 가능
- **(선정기준)**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관(기업, 컨소시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컨소시엄을 협약 대상으로 선정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 대해 고득점을 획득한 컨소시엄을 우선 선정
 - * 평가항목 : ①방법론 → ②정책부합성 → ③사업관리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전문기관은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의견 미반영시 선정제외 가능
- 최종확정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문기관과 수행기관 간 협약 체결
- 정부출연금은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 * 정부 예산 배정시기에 따라 조정 가능

6. 작성 유의사항 및 기타안내

□ 유의사항

- 수행기관은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산출물*을 KAMP에 공개하여 제조혁신 확산 추진 필요
 - * (예시) 지역특화 데이터셋, 가이드라인, 기타 서비스(분석지원도구, 전처리도구, Usecase 등), 또는 기업지원 과정에서 발굴한 AI 적용 우수사례 등
- 사업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등 유·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귀속되며, 대내외 공개·배포 예정
- 수행기관은 공고 및 첨부한 파일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파악한 후 사업 목적·범위·특징, 사업 수행전략, 요구조건 등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술
 - 사업계획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 사업계획서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은 전문기관에 있으며 필요시 사업계획서의 수정,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전문기관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전문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삭제·대체 불가
- 사업계획서에 대한 분량 제한은 별도 없음

□ 기타 사항

-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연차별로 사업 수행 내역을 점검
- 사업 수행 중 사업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 수행기관은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등에 근거한 사후 정산을 통해 사업 수행 금액을 확정
- 협약 체결 이후,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통장을 개설(연차별)해야 하며, 이자는 반납을 원칙으로 함

7.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044-204-7272
사업 관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데이터전략실)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공고 세부내용	044-300-0941 044-300-0943
접수 시스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데이터전략실)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044-998-0418

☞ 관련 웹사이트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ss.go.kr